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민인정의 제한·취소·철회 사유 추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195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정 부
2. 제 출 일: 2024. 9. 23.
3. 회 부 일: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지거나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u>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u>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③ (생략)	<u>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u> 2.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음.¹⁾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

1) 「난민법」 제2조제1호

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함.²⁾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거나,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음.³⁾

[「난민법」 제19조의 난민불인정결정 사유]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 ⑥ (생략)

3)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략)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전 세계적인 테러 사건의 증가 추세,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난민인정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됨.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 제32조 및 제33조는 체약국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그 영역 내의 난민을 추방 또는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도 난민협약의 동 규정을 난민불인정, 난민인정 취소·종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난민협약⁵⁾ 제32조 및 제33조]

제32조

추 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경통제 완화 등으로 테러단체 활동도 용이해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테러 사건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음.

* 2022년 1,041건 → 2023년 1,182건(+13.5%)

* 출처: 국정원 보도자료, ‘2023년 테러정세와 2024년 전망’, 2024. 4. 30.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2021년 UNHCR(UN난민기구) 및 한국리서치 공동 수행 여론조사⁶⁾에 따르면, 난민수용 찬성 응답은 전체의 33%인 반면, 난민수용 반대 응답은 53%였는바, 난민수용 반대 사유로는 난민 수용으로 정부나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64%)이 가장 높았으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57%), 난민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범죄 같은 사회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52%)가 그 뒤를 이었음.

개정안은 일부 국민이 난민수용에 대해 갖는 이러한 불안감 또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여 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가안보·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난민 체류 불허 또는 철회·갱신 거절의 사유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보다 징역형 선고 등 유죄확정판결이나, 국가안보·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 등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

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발효일 1993. 3. 3] [다자조약, 제1166호]

6)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2021. 1.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 대상 표본조사)

한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국가안보·공공질서 등을 난민 제한 사유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

- (유럽연합) 국가안보·공공질서로 불가피한 경우 난민 체류 불허(EU지침 「Directive 2011/95/EU」 제24조)
 - 안보에 대한 위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확정판결 시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종료·갱신거절(동 지침 제14조)
- (독일) 공공안보·공공질서의 중대한 이유로 추방되었거나 국가안보·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거부(난민법 제30조)
 - 안보에 대한 위험, 특히 중대한 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등의 경우 난민 불인정(난민법 제3조, 체류법 제60조)
- (네덜란드) 국가안보·공공질서에 위험이 되는 중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거부, 국가안보·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난민인정 철회·갱신거절(외국인법 제30b조, 제32조)
- (벨기에) 국가안보·공공질서에 위험한 경우 영토접근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영토에 거주·정착할 수 없다고 결정(외국인의 입국·거주·정착·추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
- (미국) 안보에 대한 위험, 특히 중대한 범죄 또는 가중 중범죄로 유죄확정판결, 테러 관련 활동 등의 경우 난민지위 배제·종료(이민국적법 제208조 등)
- (프랑스) 안보에 대한 위험, 프랑스·EU회원국·제3국가에서 중범죄·테러(옹호) 행위로 선고받았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난민지위 배제·종료(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비호권 법전 제511-7조 등)

※ 자료 : 법무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로 추가할 경우,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난민인정 요건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난민인정 범위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22조는 난민인정자가 난민신청 당시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지거나, 신청 이후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 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

난민신청 당시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였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결정은 처음부터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난민인정 이후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난민인정결정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전술하였듯이 개정안은 제19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로 추가하고, 이는 안 제22조를 통해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만 있어도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바,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조항 표현 및 요건의 타당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